

제안요청서
“ ‘24 전자납품체계 및 작업분류계(WBS) 운영 지원”

2024.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1장 위탁용역 개요

1. 용역명 : 24 전자납품체계 및 작업분류체계(WBS) 운영 지원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12일 까지
3. 용역예산 : 130,000,000원 (부가세 포함)
4. 용역범위 :
 -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우리 연구원에 의뢰한 「23 건설정보표준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정보표준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과업범위는 “2. 과업지시서” 내용과 같다.

제2장 계약관련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및 하도급 불허
-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제한이 적용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 방법 등)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제안서 평가결과(90%)와 가격평가(10%)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부터 협상을 통하여 계약한다.
-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9호)
 - 예산회계규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규, ' 19.12.31)
 - 위탁용역관리지침(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건설사업정보화(CALS)사업 관리지침」
 - 「소프트웨어 진흥법」

4. 제안 요구사항 및 평가항목

-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기술평가 비중은 90%, 가격평가 비중은 10%로 한다.

(1) 기술평가

- 5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아래의 “용역계약자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제안업체별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단,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기술평가 합산평균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시행한다.
- 평가는 “용역계약자 선정평가기준”의 배점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로 실시한다.

(2) 가격평가

- 가격평가는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cdot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cdot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left[2 \times \left(\frac{\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 기술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에서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가격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이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용역계약자 선정평가기준

구 분		배점	비 고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1. 기술·지식능력 (20점, 필수)	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10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10	
2. 인력·조직·관리기술 (20점, 필수)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20	
3. 사업수행계획 (30점, 필수)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30	
4. 재무구조·경영상태 (10점, 필수)	자기자본비율	5	◎ 정량평가 (붙임-양식1의 서식2 참조)
	유동비율	5	
5. 보안관리계획 (5점, 필수)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5	
6. 지원·운영지원 및 사후관리 (10점, 선택)	지방국토청·건설사 대상 기술 및 운영지원 방안	5	
	과제 종료 후 기술 및 운영지원 방안	5	
7. 상호협력 등 (5점, 선택)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	5	
계		100	

(3)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기준

○ 항목별 배점

구분	배점	비고
자기자본비율	5	기준비율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 / 업계 평균자기자본비율
유동 비율	5	기준비율에 의한 유동비율 = 유동비율 / 업계 평균유동비율

○ 자기자본비율 배점

구분	130% 이상	130% 미만 ~ 100% 이상	100% 미만 ~ 90% 이상	90% 미만 ~ 80% 이상	80% 미만 ~ 70% 이상	70% 미만
배점	5	4.5	4.0	3.5	3.0	0.0

○ 유동비율 배점

구분	130% 이상	130% 미만 ~ 100% 이상	100% 미만 ~ 90% 이상	90% 미만 ~ 80% 이상	80% 미만 ~ 70% 이상	70% 미만
배점	5	4.5	4.0	3.5	3.0	0.0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산정방법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기준비율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100		평가비율 = 자기자본비율 / 업계 평균자기자본비율 × 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평가비율 = 유동비율 / 업계 평균유동비율 × 100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 지분률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적용

※ 제안요청서에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무제표증명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포함하여 제안서를 제출

5.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장소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접수방법 : 온라인(e-발주시스템) 제출

6.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는 별도의 통보과정을 생략한다.
- 마감 일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중요한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본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연구원과 위탁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 위탁용역업체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사업수행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사 대표명의로의 약속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용역 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반비용(임대료·전기·전화료 등)은 제안 업체에서 부담한다.
- 제안업체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함. 제안사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제안서에 포함된 문서 및 내용을 대외비로 하여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에 공개 및 제공을 금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은 본 과업의 사정상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1.12.30)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기술평가”의 발표는 위탁용역업체 사업책임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책임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해야 한다.

7.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사업종료(검수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에 SW사업정보 조사서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붙임. 참조)
- 본 용역은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으로 사업총괄책임자(PM), 데이터분석가, IT품질관리자에 관한 투입인력계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현 수석연구원(031-910-00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 본 제안서는 국토교통부 단체표준 중 건설정보표준(6종)에 관한 운영 지원을 위한 위탁용역 업무에 해당된다.
- 건설정보표준 운영 지원은 기 적용 중인 건설정보표준(6종) 운영 관리, 표준 및 지침의 제·개정, 설계·준공도서 성과품 관리 및 관련 지원도구 유지보수 등 국토부 전자 납품체계 운영, 작업분류체계(WBS)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체계 운영, 교육·홍보, 기술지원 및 Helpdesk 운영 등 건설정보표준의 전반적인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2 제안서 효력 등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제안서 목차(안)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다.

I. 제안개요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등을 명확하게 요약·기술하여야 한다.

II. 제안업체 현황

- 제안업체의 연혁 및 개요를 작성한다([서식 1] 참조).
- 재무상태와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제시하고([서식 2] 참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고 본 제안을 담당할 조직 및 지원 가능한 인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사용역 사업실적([서식 3] 참조)은 최근 3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관련 표준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건설관련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실적만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각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4] 참조)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고 본 제안을 담당할 조직 및 지원 가능한 인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III. 사업추진 계획

- 사업추진계획은 될 수 있으면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계획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제안사항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안업체에서 타 업체와 차별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기술하여야 한다.

IV. 프로젝트 관리방안

가. 인력운용

- 구성인력은 원활한 기능개발을 위한 전문기술자이어야 하며, 개발사 또는 공급사의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지원 조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각 분야별 시스템관리 전문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고, 기술 수준 및 경력을 고려하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 제안업체는 발주처가 운영 중인 건설정보표준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유사 운영지원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협력업체 구성 및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등 협력업체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의 소개, 협력업체 선정사유 및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
 - 협력업체의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협력업체 인력의 정보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V. 기타지원방안

가.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

- 위탁용역 업체로 선정된 후 주 사업자 또는 협력사의 파업·파산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운영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계획

- 본 용역과 관련된 발주자의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교육내용, 기간, 인원, 장소, 강사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운영지원 계약 인계 방안

- 과업 종료 전 까지 개발기간에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처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은 “과업지시서”에서 설명된 내용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작성목차와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붙임-양식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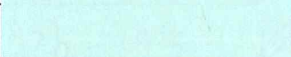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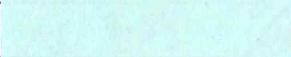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더욱 향상된 내용 또는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작성시 가능한 복수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채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연구원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연구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 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인용문구 등의 경우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 모든 페이지에 머리글과 함께 보고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장별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연구원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에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 제안업체는 [별표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별표2]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분야별 협력업체 구성
 - 제안사가 협력업체를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업체별로 활용 분야, 목적, 사유, 투입인력, 기간 등을 사업 추진 단계와 연계하여 명확하게 제시한다.
 - 제안사는 각 참여 회사 간의 관계, 수행할 과업의 내용, 책임 한계를 명백히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안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한다.

-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원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원은 제안서의 작성, 제안 설명회 등 본 용역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제안사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최종 계약체결이나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과업에 관련한 비용 역시 연구원이 책임 지지 아니한다.
-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체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안서의 세부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붙임-양식2” 제안서 평가 조건표』와 『“붙임-양식3”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는 수행 전 반드시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24 전자납품체계 및 작업분류체계(WBS) 운영 지원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산정된 FP를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산정되었음	5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 및 개발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결과, 단계별 업무량에 대한 사업기간 계획에 의해 적정하게 산정되었음	5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공공입찰에 의하여 발주되는 유사규모SW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약 5~6개월 정도가 적당함	5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신규 기능 개발 작업량과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작업량을 고려할 때 적정 사업기간은 약 5~6개월 범위 내에 있음	5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사업계획 및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산출한 5개월의 사업기간이 적정한 것으로 산정함	적정 사업기간 5개월
<p>「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6월 4일</p>		
위 원	 (명)	위 원  (명)
위 원	 (명)	위 원  (명)
위 원	 (명)	위 원  (명)
		위원장  (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4 전자납품체계 및 작업분류체계(WBS) 운영 지원	
	영향평가단계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발주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국토부의 건설정보표준에 관한 연구로서 전자도면 작성표준, 도면정보교환표준, 전자문서표준,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디지털수량산출정보 교환표준, 건설정보모델(BIM) 작성·납품 공통기준 등 6종의 건설정보표준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임 ○ 설계·준공도서 성과품의 효율적인 작성·납품을 위한 국토부 전자납품체계 운영 및 기술지원 ○ 국토부의 작업분류체계(WBS) 적용 시행에 따른 WBS 가이드라인 및 WBS정보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사용자교육 및 Helpdesk 등 WBS 운영지원 ○ 유사 건설사업의 개략공사비 분석·예측 정보 서비스 개발방안 마련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4년 7월 ~ 2024년 12월	
2. 운영계획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input type="checkbox"/>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운영기관	<input type="checkbox"/> 단일 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수 기관(예상 : 5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부 직원	100명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직원	0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국민 또는 기업	3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_____)
	<input type="checkbox"/>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_____)
	<input type="checkbox"/>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input type="checkbox"/>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_____)

5. 종합의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input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_____)

2024년 6월 4일

기관장 김 병 석 (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 증명 서류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자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미동의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1. 공고번호 :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__”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T. 031-910-0119)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양식1”

위탁사업 제안서

과제명 :

2023. ○

소속 : □□□□□□

과제책임자 :

①

요 약 문

1. 과제개요

과제명						
과제 책임자	소 속		부 서		직 위	
	성 명	(국문)			생년월일	
		(한문)			전화번호	
금 액	원 정 (부가세 포함)		기 간	200 .○.○. ~ 200 .○.○(개월)		

2. 주요제안 내용

3. 기대효과

목 차

I.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II. 제안업체 현황

1. 회사 연혁 및 개요(서식 1)
2. 재무현황(서식 2)
3.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 실적(서식 3)

III. 사업추진 계획

1. 사업 목표 및 필요성
2. 사업 추진 개념도
3. 추진 전략
4. 상세 추진 방안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6. 기타 제안 사항

IV. 프로젝트 관리방안

1. 추진일정
2.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서식 4, 5, 6, 7, 8)
3. 산출물 계획
4. 품질보증 및 보안방안

V. 기타지원방안

1. 유지보수 계획 및 방안
2.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및 방안

관련서식

[서식 1]

업 체 일 반 현 황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컨설팅분야	S/W분야	H/W분야	기 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임 * 기술자 확인가능한 자격증 사본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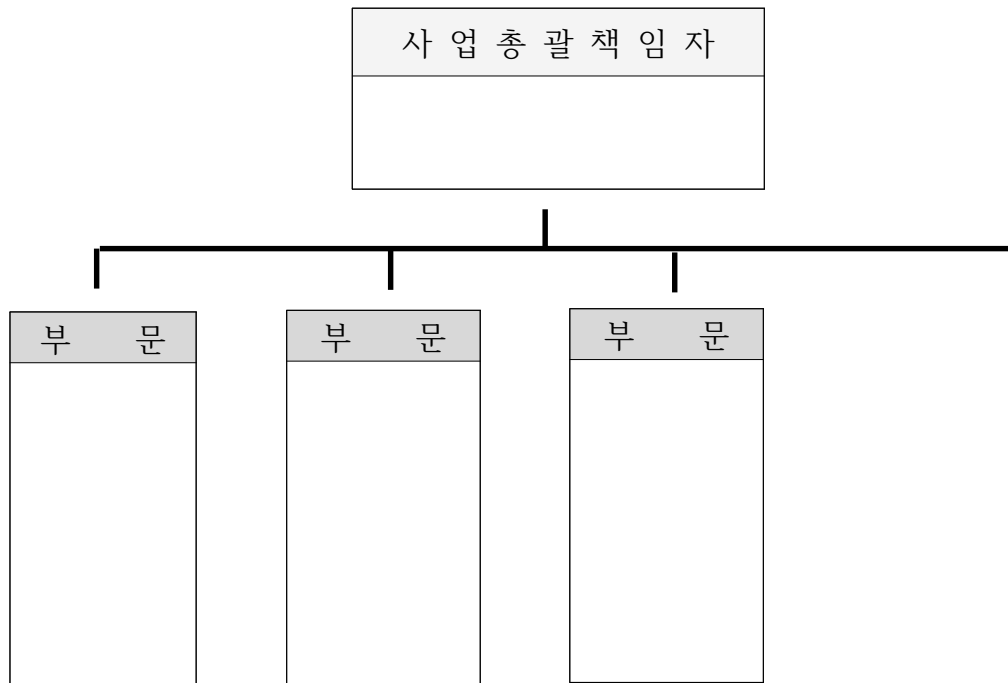
[서식 2]

최근 3년간 재무현황						
구분	연도별(단위 : 백만원)					비고
	당기말합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3년간평균	
총 자산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자 기 자 본						
당 기 순 이 익						
부문별 매출액	○○분야					
	○○분야					
	○○분야					
	기타분야					
	소 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순이익률						
유 동 비 율						
부 채 비 율						
※ 1.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2. 부채비율=((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100						

[서식 3]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사업책임 기술자	비고
※ 1. 완료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실적만 인정)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기재만 기재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관련 표준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건설관련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실적 중 1천만원 이상의 실적을 인정한다.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 분	분야별	성 명	직위	기술 등급	당해업체 재직기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또는 비상주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기술자 등급별 근무기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3년 이상									
3년 미만									
계									
※ 1. 서식 4에 포함된 기술자이어야 하며, 경력사항(서식 7) 첨부 * <u>자격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u> (<u>경력확인용이 아닌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예: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u>) 첨부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서 제출일자 기준									

[서식 7]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성명		생년 월일		부서 및 직위		입사일		근속 년수	
주소		최종 학교 (학위)		전공		해당 분야 경력		전문 분야	
본사업 참여 기간	201○. . . ~ 201○.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8-1]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연인원 (M/M)	M	M+1	M+2
계					

[서식 8-2]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의 타 사업 투입현황

성명	타 사업명	발주기관명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제안서 평가 조건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서 쪽수	비고
기술·지식능력	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사업수행계획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건수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금액		
재무구조·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보안관리계획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지원·운영지원 및 사후관리	지방국토청·건설사 대상 기술 및 운영지원 방안		
	과제 종료 후 기술 및 운영지원 방안		
상호협력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업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가점검내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고
신청인 상호 :		년 월 일
대표 :		(인)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